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11. 23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호○희	1994.11.10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지정된 상담일에 불출석 및 1차, 2차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음	취업지원 종료 및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	서울시 마포구 동막로8길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2. 11. 23. ~ 2022. 12. 13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박선미(02-2077-3474)에게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